

예 산 총 칙

2019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414,478,273	12,434,348
일반회계	382,295,833	11,468,875
특별회계	32,182,440	965,473
기타특별회계	32,182,440	965,473
상수도사업특별회계	10,024,130	300,724
수질개선특별회계	17,542,646	526,279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416,822	12,505
농공지구단지조성특별회계	167,114	5,013
농촌소득사업 운영 특별회계	4,031,728	120,952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"해당없음"으로 한다.

제 4 조 계속비 사업은 "해당없음"으로 한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3,500,000천원이고 재난·재해예비비는 25,000,976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7,8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.